

신속절차 중재규칙



klrc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지역 해결
글로벌 솔루션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다툼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 2015

Reprint 2015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or ambiguit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목차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1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2부

요금표 및 관리요금

제3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대한 안내

본 문서는 2013년 10월 24일자로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에 의해
만들어진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3판입니다.



제1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1조	해석	5
제2조	서면 통지 및 교신	7
제3조	중재 개시	8
제4조	중재판정부 선정	9
제5조	중재판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11
제6조	법률, 절차 및 관할권	12
제7조	청구이유서	17
제8조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18
제9조	서면단독중재	21
제10조	사례관리회의	22
제11조	실질적 구술심리	24
제12조	중재판정	25
제13조	판정의 기한 연장	27
제14조	중재 비용 및 경비	
제15조	이의제기의 포기 및 기피 기한	29
제16조	면책	
제17조	일방적 심리	
제18조	비밀유지	30
제19조	중재판정부 보수	
제20조	예납 및 지불	32
제21조	중재판정의 정정	34

제2부 요금표 및 관리요금

국제중재

부록 A1 중재인 보수 (USD) 36

국내중재

부록 A2 중재인 보수 (RM) 37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38

합의서 양식

제3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대한 안내 40

제1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해석

제1조

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아래의 단어들과 표현들은 각각 아래에 부여된 의미 및/또는 정의를 가진다:

“**센터**”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를 의미한다;

“**센터장**”은 당 센터의 센터장을 의미하며, 센터장이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서면으로 승인한 기타 다른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을 의미한다;

“**법률**”은 말레이시아 중재법 2005 (법률 646) 및 중재법(개정) 2011 혹은 당해 법률의 모든 법으로 정한 수정이나 재제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혹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중재인을 의미한다;

“**관련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권한이나 소유권, 통제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쟁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의미하나, 기밀이며 따라서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문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중재**”는 다음 경우의 중재를 의미한다:

- a) 중재합의의 당사자 중 일방이 당해 합의의 종결시 말레이시아 이외의 다른 주권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b) 상업적 또는 기타 관계 의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거나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말레이시아 이외의 다른 주권국에 위치해 있는 경우;
- c) 중재합의의 대상이 하나 이상의 주권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국내중재**” 는 국제중재가 아닌 모든 중재를 의미한다.

2. a) 계약의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라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분쟁(들)은 본 규칙에 따라 회부되고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중재의 개시 시점에 혹은 개시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당 센터가 채택한 당해 수정조항을 따라야 한다.
- b) 중재지가 말레이시아인 경우, 말레이시아 중재법 2005 (2011년 개정)의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서면 통지 및 교신

1.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서, 중재에 사용되는 통지, 진술서, 제출서류 또는 기타 문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당사자의 거주지, 사무소 또는 기타 우편주소에 당해 문서를 남김으로써 전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문의를 하였음에도 전기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당사자의 주소나 사무소에 문서를 남김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 수권된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받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내리거나 명하는 모든 결정, 명령 및 판정뿐 아니라 중재절차를 위해 제공되거나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 혹은 기타 문서가 당해 변호사나 수권 대리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실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당사자가 문서의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수령했어야 하는 날짜는 당해 특정 문서가 당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짜로 간주된다. 당 센터나 그 직원에게로의 문서 송달은 본 규칙을 따라야 한다.
4. 기타 모든 형태의 서면 교신의 유효성에 반하지 않고, 서면 교신은 당사자의 번호, 주소 또는 장소로 송달된 서면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다른 전자적 통신수단일 수 있다. 당해 송달은 발송한 날 도달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통지, 진술서, 제출서류 또는 기타 문서가 수령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신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휴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진행 중의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3조

중재 개시

1. 본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는,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 (“신청인”)가 상대방 당사자 (“피신청인”)에게 본 규칙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 의사를 진술한 서면 통지 (“중재신청통지”)를 송달할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신청통지 사본이 동시에 당 센터에 송달되어야 하고 센터장 앞으로 전달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중재신청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당사자들 및 그 변호인의 성명,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 b) 당사자들의 분쟁과 관련한 내용의 간략한 요약;
 - c) 본 규칙에 따라 중재되어야 하는 당해 분쟁이 발생한 합의에 대한 기술;

- d) 신청인이 단독중재인 역할을 위한 후보로 지명하는 최소 1인의 이름과 직업적 상세 정보 혹은 3인의 중재인단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정히 선정한 중재인의 이름과 직업적 상세 정보;
 - e) 다른 상대방에게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동의하거나 혹은 3인 중재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을 정히 선정하라는 요청;
 - f) 중재합의의 사본;
 - g) 신청인이 직접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제7조에 따른 포괄적 청구이유서.
3. 당 센터에 송달되는 중재신청통지 사본에는 당 센터가 본 규칙에 따른 중재의 개시를 위해 규정하는 환불불가능한 신청요금에 해당하는 총액을 당 센터 앞으로 발행한 수표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의 선정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는 단독중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그 선정에 대해서는 중재개시 7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중재개시 7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센터장은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고 당해 선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당해 중재판정부의 이름과 우편주소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 a) 각 당사자는 중재개시 후 7일 이내에, 혹은 7일의 경과 이전에 시간 연장이 적용되었고 센터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보다 긴 시간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b) 일방 당사자가 중재개시 7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했고 7일의 경과 이전에 그러한 선정을 위한 시간 연장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센터장은 두번째 중재인을 선정하고 당해 선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두번째 중재인의 이름과 우편주소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c) 상기의 2인 중재인들이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의장중재인 선정을 요청받은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 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고 당해 선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의장중재인의 이름과 우편주소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d) 실질적 구술심리는 3인 중재인이 선정된 이후에만 속개되어야 한다;
 - e) 의장중재인의 선정 이후, 결정, 명령 혹은 판정은 중재인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f) 제4조 3(g)항에 따라 만장일치나 다수결이 불가능한 경우 결정, 명령 혹은 판정과 관련해서는 의장중재인의 견해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4. 중재판정부 선정 요청서에는 당 센터가 선정 요건으로 규정하는 총액을 당 센터 앞으로 발행한 수표를 동봉하여야 한다.
 - 5. 중재판정부의 선정과 동시에 (동사자들의 합의인지 센터장에 의한 선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인은 즉각 중재신청통지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중재판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

- 1.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는 중재판정부는 항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떤 당사자든 옹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법률, 절차 및 관할권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하기로 지정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법률의 저촉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중재지는 말레이시아이다. 본 규칙에 따른 중재법은 말레이시아 중재법이다.
3. 본 규칙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말레이시아에서 내려진 판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언어는 영어이다.
5. 본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의 공정, 신속, 경제적 및 최종적 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또한 중재법에 따라 허용되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점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기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분쟁의 공정, 신속, 경제적 및 최종적 결정을 이루기 위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관할권은 다음의 권한 및 관할권을 포함한다:
 - a)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절차를 수립한다;

- b) 모든 제출서류나 기타 자료가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송달될 것을 명한다;
- c) 당사자에 의한 문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제한한다;
- d) 당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한 경우, 청구이유서나 답변서에서 제시하지 못한 제한된 식별 문서 또는 관련 문서의 특정한 공개 및 발견을 명하며, 다른 상대방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당해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다른 당사자가 공개 의무를 불이행한다고 간주한다면 판정에 있어 불리한 추론의 도출을 명한다;
- e) 문서의 제출 및 제시를 비롯한 절차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의 불이행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문서의 미준수 제출 또는 제시에 대해서는 어떤 비중도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 f) 중재판정부의 전문가 지식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들에게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문가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 g) 먼저 허락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부여한 조건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증거 또는 추가 전문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전문가 증거를 제시할 그러한 허락이나 허가에 대한 요청은 답변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전문가 증거의 경우, 그러한 허락에

대한 요청은 당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전문가 보고서 송달/교환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 전문가 진술서는 당해 당사자의 증거로 제시되지 못한다;

- h) 독립적인 전문가 선정의 경우 당해 선정 및 그 관련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특정 문제에 대해 신문 및 보고할 전문가를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당해 전문가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나 상품, 재산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 i) 당사자들이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나 물건을 제작하고 해당 중재의 대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 또는 항목의 물리적 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한다;
- j)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을 중재에 병합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결정하는 단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 k) 해당 분쟁(들)의 간편한 결정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실질적 구술심리를 위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 i) 증거로 사실에 대한 증인의 진술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당해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령;
- ii)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반대신문 또는 재신문을 위해 제한된 시간을 비롯하여 심리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 iii) 증인들의 직접 증거는 확인된 증인 진술로만 한정될 것이며, 증인 진술에 대한 수정 및 이러한 증인 진술의 동시 교환을 위한 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의 추가적인 직접 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령;
- iv) 증인 답변 진술은 당사자들이 선택할 시에만 제출할 수 있다는 명령 및 이러한 증인 진술의 동시 교환을 위한 명령;
- v) 반대신문의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반대신문의 생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인 진술의 제시자 및/또는 진술 및/또는 입증자료에서 식별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반대신문을 위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의 불이행시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속개하고 중재판정부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진술이나 증거에 그러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과 심리를 속개하고 진술이나 증거를 모두 배제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명령;

- vi) 증인 진술의 부재시, 당사자들이 서명한 청구이유서,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및 반론서 (및 반대신청에 대한 방어)가 심리에서 당사자들의 증거로서 적용된다는 명령;
- vii) 심리에서 다루어야 할 증인들 및/또는 전문가들의 제한이나 수 규정에 대한 명령;
- viii) 특정 증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반대신문할 쟁점들이 무관하며 심리에서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
- ix) 중재판정부가 인정하는 것 이외에 특정 증인들 또는 전문가들이 반대신문하는 다른 모든 쟁점에 어떤 비중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명령;
- x) 사전심리 질문서에 대해 답하라는 명령;
- xi)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실 및/또는 법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증인들 또는 전문가들 자신에 대한 심문의 수행 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조사의 수행;
- xii) 2인 이상의 증인 및/또는 전문가가 증거를 함께 제시하라는 요청;

- xiii) 필요한 경우, 답변에서 신속한 서면제출서에 대한 제한적 권리와 함께 서면제출서를 동시에 송달 및 교환하라는 명령;
- xiv) 본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7일까지, 센터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14일까지로 연장. 센터장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의 자문을 얻어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청구이유서

1. “청구이유서 (Statement of Case)” 는 그 포괄적 특성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사건 및 관련 청구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의 진술;
 - b)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의 진술에서 원용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
 - c) 신청인의 논거 및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서류의 사본;
 - d)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의 주장 및 신청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법적 권한의 사본;
 - e) 청구인의 청구취지의 모든 항목;

- f) 모든 정량화할 수 있는 청구 항목은 관련 계산 및 총액을 입증할 명세 (적용가능한 경우) 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8조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1. 피신청인은 중재개시 28일 내에,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직접 혹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신청인의 청구이유서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서 (Statement of Defence)” 를 송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반대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직접 혹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반대신청과 관련된 포괄적인 청구이유서가 답변서와 같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문서는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Statement of Defence and Counterclaim)” 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2.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는 그 포괄적 특성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신청인의 논거 및 청구에 대한 확인 또는 부인;
 - b) 당해 논거 및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 피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

- c)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의 진술에서 원용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
 - d) 피신청인의 방어와 관련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타 문서의 사본;
 - e) 피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의 주장 및 피신청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법적 권한의 사본;
 - f) 신청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합의 또는 반대의 식별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주장;
 - g)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이유서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보 및 문서.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의 수령 후 7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직접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피신청인의 방어에 대한 포괄적인 “반론서 (Statement of Reply)” 를 송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반대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서가 반론서와 같은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문서는 “반론서 및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Statement of Reply and Defence to Counterclaim)” 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4. 반론서 (및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 는 그 포괄적 특성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피신청인의 방어에 대한 확인 또는 부인;
 - b) 피신청인의 방어에 대한 반론에 있어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
 - c) 사실 및 충분한 세부사항의 진술에서 원용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
 - d) 신청인의 반론과 관련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타 문서의 사본;
 - e)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률의 주장 및 신청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법적 권한의 사본;
 - f)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합의 또는 반대의 식별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주장;
 - g) 신청인이 반대신청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보 및 문서.

5.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진행하고 신청인이 반론서 및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서 및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수령 후 7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본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반론서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보 및 문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반론서 (“피신청인의 반론 (Respondent’s Reply)”) 를 송부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서의 수령 후 7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직접 혹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본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반론서에서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합의 또는 반대의 식별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주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7. 피신청인의 반론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서의 수령 후 7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직접 혹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본 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론에서 제시한 문서에 대한 합의 또는 반대의 식별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주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서면단독중재

1. 당사자들이 서면단독중재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기의 제8조에 따라 송달된 최종 문서의 수령과 동시에, 본 규칙에 따른 분쟁의 고려 및 중재판정의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서면단독중재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한 실질적 구술심리에의 물리적 참석은 필요하지 않다.

3. 청구 및/또는 반대신청 총 분쟁금액이 국제분쟁에서 USD75,000.00 미만이거나 USD75,000.00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내분쟁에서 RM150,000.00 미만이거나 RM150,000.00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재인들이 당사들과의 협의 하에 실질적 구술심리에 의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한, 중재는 서면단독중재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례관리회의

1. 중재가 서면단독중재가 아닌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개시일로부터 늦어도 8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회의 (“사례관리회의 (Case Management Meeting)”) 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례관리회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해, 대면회의, 화상회의, 전화나 기타 다른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례관리회의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상태에 대해 질의하고 중재의 추가 수행을 위한 명령을 고려한다. 본 규칙에서 명시된 중재판정부의 권한 및 관할권에 더하여, 중재판정부는 또한 다음의 명령을 내린다:

- a) 청구이유서, 답변서 혹은 반론서의 제시 및 교환이나 본 규칙의 다른 상기 절차의 준수는,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의해 규정된 기한 내에 당해 진술서의 교환이나 당해 절차의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 제1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해 본 규칙에 따라 규정되는 것보다 짧은 시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령. 어떤 경우든 그러한 기한은 본 규칙에 따라 규정된 기한을 넘기지 못한다;
-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실질적 구술심리는 당 센터 부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명령;
- c) 본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주어진 권한 및 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분쟁(들)의 간편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질적 구술심리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명령;
- d) 추가 지시나 명령에 대한 모든 신청은 반론서 송달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당해 진술서가 본 규칙에 따라 이미 교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례관리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신청이 당시까지 중재판정부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명령과 당해 신청(들)은 신청의 이유를 마련하는 당사자가 직접 혹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한 진술서 및 모든 관련 근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명령. 중재판정부는 당해 신청(들)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절차에 따라 명령을 내린다;

- e) 제10조 2(d)항에 규정된 기한 이후 중재판정부에 송달된 추가 명령을 위한 모든 신청은 상기의 기한에 따라 송달되지 못했다는 단독 근거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는 명령.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당해 신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다면 제10조 2(d)항에 규정된 기한 이후 송달된 추가 명령을 위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3. 중재가 서면단독중재가 아닌 경우, 중재판정부는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경우 사례관리회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중재개시 후 늦어도 8주 이내에 제10조 2항에 따라 필요하거나 간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실질적 구술심리

1. 중재가 서면단독중재가 아닌 경우, 중재판정부는 실질적 구술심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또한 모든 경우 실질적 구술심리 이전의 모든 절차 및 과정의 종결 이후 2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구술심리는 중재개시 후 늦어도 12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실질적 구술심리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명한다.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실질적 구술심리의 개시에 대해 실질적 구술심리 이전의 모든 절차 및 과정의 종결로부터 보다 짧은

기간을 명하고/명하거나, 실질적 구술심리의 종결에 대해 중재개시로부터 보다 짧은 기간을 명하고/명하거나, 실질적 구술심리 자체에 대해 보다 짧은 기간을 명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전기의 제1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 협력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4. 모든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의 합의를 얻어, 실질적 구술심리의 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구술심리 이전의 모든 절차 및 과정의 종결로부터 추가 최대 10일까지 및/또는 실질적 구술심리의 완결과 관련하여 중재개시로부터 추가 최대 30일까지 전기의 제1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질적 구술심리 자체를 위한 기간은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의 합의로 추가 최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4일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중재판정

1. 전체로서의 해당 분쟁(들)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본 규칙에 따른 중간판정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대해 중재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 데 추가로 동의한다.
2. 중재판정부는 판결을 위해 다음의 신청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 a) 전기의 진술서나 중재에서 송달된 다른 문서에 대한 수정 허락의 신청;
- b) 문서 및 사실의 특정한 공개 신청;
- c) 중재에 따른 분쟁의 공정하고 간편한 해결을 위해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명령의 추가 또는 기타 신청;
- d) 제6조 5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전기의 제 12조 2(a)항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본 규칙에 따른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전체로서의 해당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은 그 근거에 대해 진술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서면단독중재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신속하게 또한 중재개시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5. 실질적 구술심리를 동반한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신속하게 또한 중재개시로부터 늦어도 1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발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발표는 제11조 4항에 따라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판정의 기한 연장

1. 중재판정부가 본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최종판정이 발표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기 기한이 경과되기 늦어도 14일 이전에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면을 센터장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중재판정 발표의 수정된 예정일을 진술하며 중재판정 발표를 위한 그러한 기한 연장에 대한 센터장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 비용 및 경비

1. “비용 (costs)” 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각각의 중재인마다 별도로 명시되고 중재판정부가 제19조에 따라서 정할 중재판정부의 보수;
 - b) 중재인의 정당한 여행 경비 및 다른 지출;
 - c)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전문가 자문 혹은 다른 지원에 따른 정당한 경비;
 - d)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발생한 중재인의 정당한 여행 경비 및 다른 지출;
 - e) 중재판정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중재 관련 법률 및 기타 비용.

2. 비용은 즉결 및 상업적 기준으로, 또한 중재판정부가 절대적 재량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며 분쟁대상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및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해 비용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비용, 보수 및 경비에는 세금이나 고등법원의 심리가 없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의 회수가능 비용은, 어느 당사자도 서면단독중재에서는 청구 및 반대신청 총액의 30%, 실질적 구술심리를 동반한 중재에서는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회수할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비율은 최대 수치이며 허나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절대적 재량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용을 보다 적은 비율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4. 선언적 혹은 기타 비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서 개봉 완료에 따라 또한 단독 재량으로, 비용에 대한 어떤 전체 한도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다.
5. 중재판정부의 비용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진행할 위치가 되지마자 그러한 비용의 명세를 제공할 것이다.

제15조

이의제기의 포기 및 기피 기한

1. 중재법 제7조의 목적을 위한 이의제기 기한은 7일이다.
2. 중재법 제15조의 목적을 위한, 상기 조항에 따른 기피의 기한은 7일이다.

제16조

면책

1. 당사자들은 본 규칙에 따른 권한, 기능 또는 의무의 이행이나 주장되는 이행에 있어 혹은 본 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나 중재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당 센터, 그 담당자, 직원, 대리인 및 위원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제17조

일방적 심리

1. 일방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 없이 정히 통지받았음에도 구술심리에 불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통지 이후 서면 증거를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해 당사자의 부재시 혹은 경우에 따라 당해 당사자를 대신하는 서면 증거나 서면 제출서 없이 중재판정부에게 제공된 증거를 토대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1.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항상 중재 및 중재판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기밀로 다루어야 한다. 당사자나 모든 중재인은,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해 문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a)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 b) 판정의 시행을 위해 어떤 국가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 c)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 d) 공개를 하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국가의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 e) 구속력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는 당사자가 관습적으로 준수할 것인 규제기관 또는 기타 당국의 요청이나 요구에 따라.

제19조 중재판정부 보수

1. 당 센터의 센터장은 요금표에 따라 중재판정부 보수를 정한다.
 - a) 일반적 규칙으로서, 부록 A1의 USD 단위는 국제중재에 적용할 의도인 반면 부록 A2의 RM 단위는 국내중재에 적용할 의도이다.

2. 중재판정부 보수는 당 센터의 관리요금을 포함한다. 센터의 관리요금은 중재판정부 보수의 20%이다. 센터의 관리요금은 중재판정부 보수에서 공제된다 (추가되는 것이 아님).
3. 상기의 중재판정부 보수 및 당 센터의 관리요금은, 예외적이거나 드물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경우, 당 센터장의 재량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
4. 분쟁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반대신청 및/또는 상계 청구 금액은 청구액에 추가된다.
5. 청구 또는 반대신청이 금전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청구 또는 반대신청에 대한 적절한 금액은 중재판정부 보수 및 관리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의 자문을 얻어 당 센터장이 결정한다.
6. 상기의 제19조 제1~2항에 따라 또한 이후 수시로, 당 센터장은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관련 보수 및 관리요금에 대해 각각의 또는 추가 예납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당사자들은 당해 요청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당해 예납금을 당 센터에 직접 지불한다. 단, 당 센터가 관련 보수를 총괄하여 초과하는 예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예납 및 지불

1. 당 센터장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중재판정부 보수 및 경비와 당 센터의 관리요금에 대해 예납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 예납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당 센터가 보유한다.
2. 당사자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 중 자기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그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당 센터는 다른 당사자가 예납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그러한 예납금이 당 센터가 고지한 후 14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또한 미납 당사자로부터 지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독점적 재량으로 다음을 할 수 있다:
 - a) 중재 및 심리를 진행하고 미납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미납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에 대한 모든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재판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 b) 지급불이행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모든 요청 예납금이 지불될 때까지 또한 지불되지 않는 한, 중재절차 또는 그 일부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

3. 중재판정이 발표된 후, 중재판정부는 5부의 밀봉된 중재판정 사본을 당 센터에 제출하고, 당사자는 당 센터에 대한 중재판정 비용의 완전 해결 후 중재판정을 수령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4.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 당사자들 간에 쟁점 또는 분쟁의 상호 해결이 있는 경우, 만약 있다면 상호합의 이전에 지급된 예납금이 관련 요금을 대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를 비롯, 당사자들은 관련 요금에 대한 미납 총액을 중재판정부에 공동 및 각자 지불할 책임이 있다. 동의 중재판정이 내려지거나 송달되도록 하는 요청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규칙이 적용된다.
5. 전체 중재 또는 어느 쟁점이 심리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어 청구 총액이 감소되는 경우, 관련 요금은 새로운 총액으로 재계산할 수 있고 새로운 관련 요금과 이전 관련 요금 간 차이의 40%는 14일 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해결이 심리 도중 또는 심리 이후이나 판정 전에 발생한다면, 관련 요금의 80%를 지급해야 하거나, 쟁점이 해결되어 청구 총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련 요금과 이전 관련 요금 간 차이의 80%를 14일 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6. 최종 판정 이전에 합의나 다른 것에 의해 포기, 중지 및 종결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당 센터 및 중재판정부에 모든 요금 및 비용에 대해 전액 지불할 공동 및 개별 책임을 진다.

제21조

중재판정의 정정

1. 당사자의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와 함께, 중재판정문의 계산상의 착오,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오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누락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해 요청의 수령 후 14일 이내에 중재판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정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자유 의사인 경우 중재판정이 당사자들 (또한 경우에 따라 일방 당사자) 에게 송달된 후 21일 이내에 그러한 제한된 정정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모든 정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부

요금표 및
관리요금



중재판정부 보수*

국제중재

부록 A1

분쟁금액 총액 (청구 + 반대신청) = 고정금액

분쟁금액	중재인 보수 (USD)
50,000 이하	3,500
50,001 ~ 100,000	3,500 + 50,000 초과분의 5.40 %
100,001 ~ 500,000	6,200 + 100,000 초과분의 2.475 %
500,001 ~ 1,000,000	16,100 + 500,000 초과분의 1.8%
1,000,001 ~ 2,000,000	25,100 + 1,000,000 초과분의 0.90%
2,000,001 ~ 5,000,000	34,100 + 2,000,000 초과분의 0.45%
5,000,001 ~ 10,000,000	47,600 + 5,000,000 초과분의 0.225%
10,000,001 ~ 50,000,000	58,850 + 10,000,000 초과분의 0.1125%
50,000,001 ~ 80,000,000	103,850 + 50,000,000 초과분의 0.045%
80,000,001 ~ 100,000,000	117,350 + 80,000,000 초과분의 0.03375%

국내중재

부록 A2

분쟁금액 총액 (청구 + 반대신청) = 고정금액

분쟁금액	중재인 보수 (RM)
150,000 이하	10,500
150,001 ~ 300,000	10,500 + 150,000 초과분의 5.40%
300,001 ~ 1,500,000	18,600 + 300,000 초과분의 2.475%
1,500,001 ~ 3,000,000	48,300 + 1,500,000 초과분의 1.80%
3,000,001 ~ 6,000,000	75,300 + 3,000,000 초과분의 0.90%
6,000,001 ~ 15,000,000	102,300 + 6,000,000 초과분의 0.45%
15,000,001 ~ 30,000,000	142,800 + 15,000,000 초과분의 0.225%
30,000,001 ~ 150,000,000	176,550 + 30,000,000 초과분의 0.1125%
150,000,001 ~ 240,000,000	311,550 + 150,000,000 초과분의 0.045%
300,000,000 이상	352,050 + 240,000,000 초과분의 0.03375%

* 중재판정부 보수는 당 센터의 관리요금을 포함한다. 센터의 관리요금은 중재판정부 보수의 20%이다.

항목 번호

요금

- 환불불가능한 신청요금** RM250.00/USD100.00
 (제3조 3항 - 중재신청통지의 송달 즉시 지급)
- 선정 요금** RM400.00/USD150.00
 (제4조 5항 - 중재판정부 선정 요청의 도달시 지급)

KLRCA 신속절차 표준중재조항

당사자들의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을 이용한 중재 의사가 충족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KLRCA는 다음의 표준중재조항을 권장한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다툼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합의서 양식

기존의 중재 조항을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회부하는 조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일 삽입] 일자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양식은 합의/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중재에 대한 즉석 신청을 바라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부

KLI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대한 안내



1.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이란 무엇입니까?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신속하게 중재판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규칙은 중재 (실질적 구술심리와 함께) 가 최대 16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단독중재인 중재 (당사자들이 다수의 중재인을 선호하지 않는 한) 가 되도록 시도할 것을 규정합니다. 본 규칙은 또한 중재판정부 보수 및 회수가능 비용을 고정 단위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매력적인 특징은 또한, 의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공개 의무조항 및 당사자와 판정부가 특정 쟁점에만 집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증거의 통제된 사용을 포함합니다.

2.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표준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기본적 요건 중 하나는 당사자들 간 중재합의의 존재입니다. 중재합의는 합의서의 중재조항의 형태로 혹은 추가 합의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집행가능한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다툼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신속절차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기존의 중재 조항을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회부하는 조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일 삽입] 일자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양식은 합의/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중재에 대한 즉석 신청을 바라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과 KLRCA 중재규칙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여러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재인의 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는 3인의 중재인단에 의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단독중재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제4조 참조).

서면단독심리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라서는, 청구액이 RM150,000.00 (국내분쟁에서) 및 USD75,000.00 (국제분쟁에서) 미만이거나 그것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재인들이 당사들과의 협의 하에 실질적 구술심리에 의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한, 중재는 즉시 서면단독중재로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

진술서의 제출, 심리 및 중재판정의 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최대 1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반면 KLRCA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완료에 이르기까지 1년 (365일) 에서 1년 반 (547일) 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용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보다 비용 효과적입니다. 또한, 본 규칙은 비용 평가를 보다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은 요금을 정할 때 중재인들이 참작해야 하나 그에 구속되지 않는 중재인 요금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비용에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단독중재에서는 비용이 청구 총액의 30%, 실질적 구술심리를 동반한 중재에서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및 보수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14조 및 제19조를 참조하십시오.

증거

편의의 관점에서,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은 전문가 증거 또는 추가 전문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증거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먼저 반론서나 전문가 보고서 송달/교환이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에 중재판정부로부터 허락이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4. 어떤 종류의 분쟁이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분쟁의 대부분은 건설, 상품, 보험, 해양, 에너지 및 상업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5.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을 사용하는 데 있어 장점은 무엇입니까?

중재조항이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심리는 기존의 중재법률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을 중재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분쟁을 통합하고, 법정에서의 강제적인 중재를 피하며, 또한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한 판정을 받도록 해 줍니다. 또한 당신은 또한 법적 수수료 및 중재인 보수의 부담금에 대한 지급판정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6.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비용은 얼마입니까?

중재비용은 두 범주, 즉 관리요금과 판정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리요금은 판정부 보수의 20%이며, KLRCA의 중재 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판정부 보수는 국제중재 및 국내중재에 대해 각각 다른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금표 및 관리요금은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 제 2부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중재

분쟁금액 총액 (청구 + 반대신청) = 고정금액

분쟁금액	중재인 보수 (USD)
50,000 이하	3,500
50,001 ~ 100,000	3,500 + 50,000 초과분의 5.40 %
100,001 ~ 500,000	6,200 + 100,000 초과분의 2.475 %
500,001 ~ 1,000,000	16,100 + 500,000 초과분의 1.8%
1,000,001 ~ 2,000,000	25,100 + 1,000,000 초과분의 0.90%
2,000,001 ~ 5,000,000	34,100 + 2,000,000 초과분의 0.45%
5,000,001 ~ 10,000,000	47,600 + 5,000,000 초과분의 0.225%
10,000,001 ~ 50,000,000	58,850 + 10,000,000 초과분의 0.1125%
50,000,001 ~ 80,000,000	103,850 + 50,000,000 초과분의 0.045%
80,000,001 ~ 100,000,000	117,350 + 80,000,000 초과분의 0.03375%

국내중재

분쟁금액 총액 (청구 + 반대신청) = 고정금액

분쟁금액	중재인 보수 (RM)
150,000 이하	10,500
150,001 ~ 300,000	10,500 + 150,000 초과분의 5.40%
300,001 ~ 1,500,000	18,600 + 300,000 초과분의 2.475%
1,500,001 ~ 3,000,000	48,300 + 1,500,000 초과분의 1.80%
3,000,001 ~ 6,000,000	75,300 + 3,000,000 초과분의 0.90%
6,000,001 ~ 15,000,000	102,300 + 6,000,000 초과분의 0.45%
15,000,001 ~ 30,000,000	142,800 + 15,000,000 초과분의 0.225%
30,000,001 ~ 150,000,000	176,550 + 30,000,000 초과분의 0.1125%
150,000,001 ~ 240,000,000	311,550 + 150,000,000 초과분의 0.045%
240,000,000 이상	352,050 + 240,000,000 초과분의 0.03375%

* 중재판정부 보수는 당 센터의 관리요금을 포함한다. 센터의 관리요금은 중재판정부 보수의 20%이다.

항목 번호

요금

1. 환불불가능한 신청요금 RM250.00/USD100.00
(제3조 3항 - 중재신청통지의 송달 즉시 지급)
2. 선정 요금 RM400.00/USD150.00
(제4조 5항 - 중재판정부 선정 요청의 도달시 지급)

7.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할 때 당사자들이 KLRCA 중재인 패널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한이 부과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선택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4조 참조)에는, KLRCA 센터장이 적절한 선정을 하기 위해 KLRCA 중재인 패널에게 문의합니다. KLRCA는 500명 이상의 국내 및 국제 중재인 공개 패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서 KLRCA는 패널들이 CIArb 펠로우십을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LRCA 패널들은 또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베테랑들입니다.

8.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의 회부를 위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를 위해 미해결 분쟁을 KLRCA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KLRCA 신속절차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려는 의사를 진술하는 통지를 보낼 것이 요구되며 사본은 당 센터장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9. 중재절차 도중에 청구 총액이 원 추정치보다 더 많거나 더 적다고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구 또는 반대신청 총액이 최초 산정액보다 더 많은 경우, 당 센터장은 신청인 또는 경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중재의 속개 이전에 추가요금을 지불할 것을 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 또는 반대신청 총액이 최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지불된 판정부 보수의 차액은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들에게 환불합니다.


10. 중재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본 규칙의 제6조 2항에 따라, 중재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본 규칙에 따른 중재법은 말레이시아 중재법 2005 (2011년 개정) 이나 해당 중재법의 법으로 정한 개정 또는 재제정입니다.

11. KLRCA는 전문 분야에서의 중재를 관리할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KLRCA는 전문 산업분야에서의 중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센터들과는 달리, KLRCA는 다양한 전문 산업분야에 맞추어 전문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본 규칙은 이미 예를 들자면 해양산업과 같은 다양한 전문 산업분야의 자문을 구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본 중재규칙은 평범한 상사분쟁뿐 아니라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KLRCA 패널은 건설, 에너지, 해양 및 상업 부문을 망라하는 뛰어난 산업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해결
글로벌 솔루션

신속절차 중재규칙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의
후원하에 설립됨)

Bangunan Sulaiman
Jalan Sultan Hishamuddin
50000 Kuala Lumpur
Malaysia

T +603 2271 1000

F +603 2271 1010

E enquiry@klrca.org

www.klrca.org